

민정복합민정기획담

만정, 국민 대표 회담 결과

- '87. 8. 4, 10:00 - 11:50 (국회 524호실)
- 발표 내용
 - 1. 이 협상은 8. 20까지 합의가 되도록 양당대표가 최대한 노력한다.
 - 2. 회의는 격일제로 운영하되 각당의 사정에 따라 적의조정할 수 있다.
 - 3. 회의주제는 만정 권익현대대표와 국민 김강수 대표가 고대로 하되 내용발표는 주제자측에 따라 만정 이한동 대표와 국민 김효영대표가 고대로 발표한다.
 - 4. 다음 회의는 8. 7, 10:00에 개최한다.
- 협의 내용
 - 1. 양당의개헌시안 대비포를 만들어 협의하였는 바 오늘은 전문과 총강까지 협의하였음
 - 전문 내용중 3. 1 운동후 발족된 임시정부법통인정 문제
 - 만정당안의 제 5 공화국출범에 즈음한 분구 삽입문제
 - 국민당안의 저항권 명시 문제등에 대하여 양당 대표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는 보지 못하였음
 - 2. 총강부분중 재외 국민보호조항을 선언적 조항에서 의무적조항으로 하는 데에는 의견 접근

3. 평확통일, 재산공개 조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었음
4. 정당 관련 조항에 대하여 "목적과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민정당안대로 "목적"을 삽입
5. 정당 해산 조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하였으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중 어느 기관에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계속 논의키로 하였음

민정, 국민 2차 정치 회담

(8/7, 국회 522호실)

○ 신체의 자유 조항

민정 11조
국민 11조

- 제 1항 보안처분 부분은 계속검토하기로 하고
- 민정 제 5항 "체포, 구금을 당한 -- 가족에게 통지" 부분에 대해 국민당은 이 조항이 형소법에 있어 반대의견 제시했으나 민정당안에 의견 접근 봄

○ 언론출판 자유 조항

민정 20조
국민 20조

- 제 2항 영화, 연예 검열 부분은 계속검토하기로 함
- 민정 제 3항 신문, 통신, 방송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부분은 민정당안에 의견 접근 보았으나 편집, 편성, 부분은 계속검토하기로 함
- 민정 제 4항 언론 피해 배상 청구권 부분 의견 접근 봄

○ 학문과 예술의 자유 조항

민정 21조
국민 21조

- 민정 2항 과학기술자를 추가 하는 것에 의견 접근

○ 선거 연령 (23조)

- 검토 사항

○ 재판받을 권리 조항

민정 26조
국민 26조

- 제 2항 국민당에서 간첩죄를 추가 시키자는 의견 있었으나 민정당중 군 사상 기밀누설 조항이 이에 해당되므로 민정당 받아들임
- 민정 5항은 신설시키기로 합의

○ 이중 배상 청구 조항

민정 28조
국민 28조

- 민정 2항 삭제 여부 합의되지 못하고 계속 검토하기로 함

○ 민정 29조

- 신설키로 함

○ 교육 권리 조항

- 문안 정리키로 함.

(민정 30
국회 4)

○ 근로의 권리 조항

- 최저 임금 조항 합의됨

(민정 30조
국회 30조)

- 민정 4항 문안 정리 키로 함

○ 노동 3권 조항

- 양당 의견이 대체적으로 같으나 ③항에
이견이 있어 계속 검토키로 함

(민정. 국회 31조)

○ 인간다운 생활조항

- 민정 2항 여자의복지, 권익 향상부문문안
정리키로 함

(민정. 국회 32조)

- 민정 5항 국가 구호대상 부문, 문안정리키로 함

- 민정 4, 6항 35조 3항 국가복지 정책부문
문안정리키로 함

✓ 2권.

○ 가족생활 조항

- 현행헌법 34조 유지 하며

(민정. 국회 34조)

민정 34-2항 새로 추가하는데 함의.

○ 기본권제한 조항

- 현행 헌법(국민당안)유지키로 합의

(민정 36조, 국회 35조)

○ 정기국회 회기

- 90일 - 120일 까지 의견있었으나 100일
안에 의견접근

(민정 46, 53조
국회 77조)

○ 국회 비공개 회의 요건

- 국민당이 민정당안에 의견 접근

(민정 49조
국회 80조)

○ 준예산 지출 기준
(민정 532, 국민 84)

○ 국정조사 감사조항
(민정 60
국민 91)

○ 국무총리, 국무 위원 불신임
(민정 62
국민 93)

- 민정안에 합의

- 민정 2항 국정감사 대상, 범위절차들을
법률도 정하부분에 이견이 있어 전면
재 검토키로 함

= 이견부분 (계속경도)

1. 국무총리임명후 1년내 불신임금지 조항
2. 총리 해임시 전 국무위원 해임조항
국민당에서 삭제 주장했으나 민정에서는
총리가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갖고 있으므로
유지 시켜야 한다는 입장
3. 해임 발의를 1/3에서 1/4로 줄이는
부분

4 人 政 治 會 談

(民 正 黨 · 國 民 黨)

| | | | |
|-------|--------------------------|-----|----------|
| 時 | 1987년 11월 13日 (목) ~ | 場 所 | 국회 522호실 |
| 參 席 者 | 권익현, 이한동, 김광수, 김효영 | | |
| 主 題 | 헌법개정심의 | | |

심의내용 발표 : 이한동, 김효영

국민당아고는 1독회를 오늘 모두 마쳤다.

○ 대통령의 지위문제

결 과 : 국가원수를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함.

○ 대통령의 입후보요건

결 과 : 1) 입후보에 정당추천이 필요없는 민정당안에 합의
2) 5년이상 국내거주 부분은 계속 검토하기로함.

○ 대통령의 임기

결 과 : 계속 검토하기로함.

○ 대통령 권위, 임기만료시 후보자선출 문제

결 과 : 민정당안에 의견접근

민정당안 : 임기만료 70일내지 40일전에 선거

국민당안 : 60일전에 선거

○ 대통령 취임시 국회의원, 대법관 참석문제

결 과 : 선서하는 자리에 국회의원, 대법관이 꼭 참석하도록 규정된
국민당안을 긍정적으로 민정당에서 검토하기로함.

- 대통령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붙이는 문제(헌행 47조)
 - 결 과 : 국민당은 삭제했는데 이것은 계속 검토하기로 함.
- 대통령의 국회해산권문제
 - 결 과 : 계속 검토하기로 함.
- 국무회의 성격
 - 결 과 : 현행 헌법대로 심의기관으로 하기로 합의함.
- 국정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 결 과 : 계속 검토하기로 함.
- 대법원에 행정, 조세, 노동, 근사등 전담부설치조항
 - 결 과 : 국민당안을 받아들이고 민정당안 101조 2항 부분은 삭제하기로 함.
 - 민정당 :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법원조직법에 위임하면 될 것이다.
-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방법
 - 결 과 : 법관추천 회의를 두느냐 안두느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 계속 검토하기로 함.
- 대법원장, 대법관의 임기문제(헌행 106조)
 - 결 과 : 민정 6년 국민은 5년인데 민정 6년을 국민당이 고려하기로 함.
- 법관의 파면사유(헌행 107조)
 - 결 과 : 현행 탄핵, 형벌로 되어 있는 것을 형벌이라고 하면 벌금, 구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강화하는 민정당안에 합의함.
- 위헌법률심사제도(헌행 108조)
 - 결 과 : 계속 검토하기로 함.

- 군사재판의 단심제도(헌행 111조 4항)
 결 과 : 일단 인행대로 하는 것이 좋을 나해서 잠정적으로 합의함.
- 헌법재판소 문제
 결 과 : 계속 검토키로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규칙 규율 제정권(민정 113조 6항)
 결 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내부규칙, 규율 제정권을 신설하자는 민정당안에 국민당이 합의함.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헌행 119조)
 결 과 : 더검토키로함.
 국민당 :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의장은 주민의 직선으로 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명문으로 두자.
 민정당 : 법률에 위임하자.
- 경제규제조항(헌행 120조)
 결 과 : 양당안이 결국 취지와 내용이 같은 데 표현방법상 차이가 있어 문안을 정리하기로함.
- 농어촌관계규정(헌행 124조)
 결 과 : 같은 취지니까 문안을 정리하기로함.
- 지역경제 육성 의무 조항(민정당안 122조 2항)
 결 과 :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는 민정당안에 합의함.